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u>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을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u></p>	<p>제27조(주차장)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이상</u>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p> <p><u><삭 제></u></p>

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
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
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
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
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
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
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
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p><u>공장이 밀집한 지역</u> <u>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u> <u>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u> <u>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u> <u>역</u></p> <p>② ~ ⑧ (생 략)</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9